

바르고 깨끗한 교육! 부산교육청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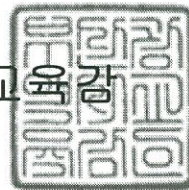
수신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장
(경유)

제목 학교시설(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서 교부

1. 학교법인한독학원-27(2015.09.09)관련입니다
2. 귀 법인에서 신청한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신청서에 대하여 불임 승인서와 같이 승인하오니,
3.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준수 사항을 지켜 시행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신청서 1부.
2. 건축승인준수사항 1부. 끝.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무관 정민수 시설기획담당사무관 정희주 교육시설과장 09/14 김문기

협조자

시행 교육시설과-7372 (2015. 9. 14.) 접수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2015. 9. 15.)
-8414
우 471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 http://pen.go.kr
전화 051-860-0774 /전송 051-860-0779 / jms3325@korea.kr / 비공개(6,7)

정부3.0(개방·공유·소통·협력)을 선도하는 부산교육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 제2면 및 제3면의 안내문과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과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3쪽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승인번호
			2015-7 □□-□-□□□

건축주	①성명 학교법인 한독학원	생년월일 184231-0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산139-7	(전화번호 051-746-2951)

설계자	②성명 신 권	면허번호 5861
	사무소명 시공종합건축사사무소	등록번호 1439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63,1113호 (초량동,국제오피스텔)	(전화번호 051-465-6047)

대지조건	위치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우동 1025-127번지의외 5필지 □□-□□□-□□-□□		
	지역 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	지역특화발전□□□
	지목 학교 □□	면적	25,559.0 m ²

용도	③주용도 교육연구시설 □□□	④부속용도
----	-----------------	-------

규모	⑤건축면적	6317.04m ²	⑥연면적	21,161m ²	지하면적	1,592.75m ²
	⑦건폐율	24.72%	⑧용적율	76.56%	건축물최고높이	12.0m
	층수(지상, 지하) (지상5층, 지하2층)					

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공사종류 증 축□					
착공예정일	준공검사에정일					
오수정화시설 접촉산화방식350인용	주차장	옥내	자주식	75	대	m ²
건축물의형태		옥외	자주식		대	m ²

⑩기술사의 확인 대상인 경우	구조기술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설비기술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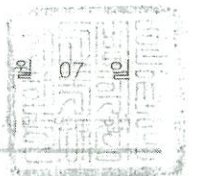
일괄처리내용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	[]
	「도시계획법」에 의한 행위의 허가,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국가사업의 협의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시설 건축·축조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2015년 09월 07일

학교법인 한독학원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지적도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3.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구분란 1 및 3의 도서 각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없 음

승 인 서

승인 제2015-7 호

이 승인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에 적합하므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를 승인합니다.



2015년 09월 14일

(교육감 · 교육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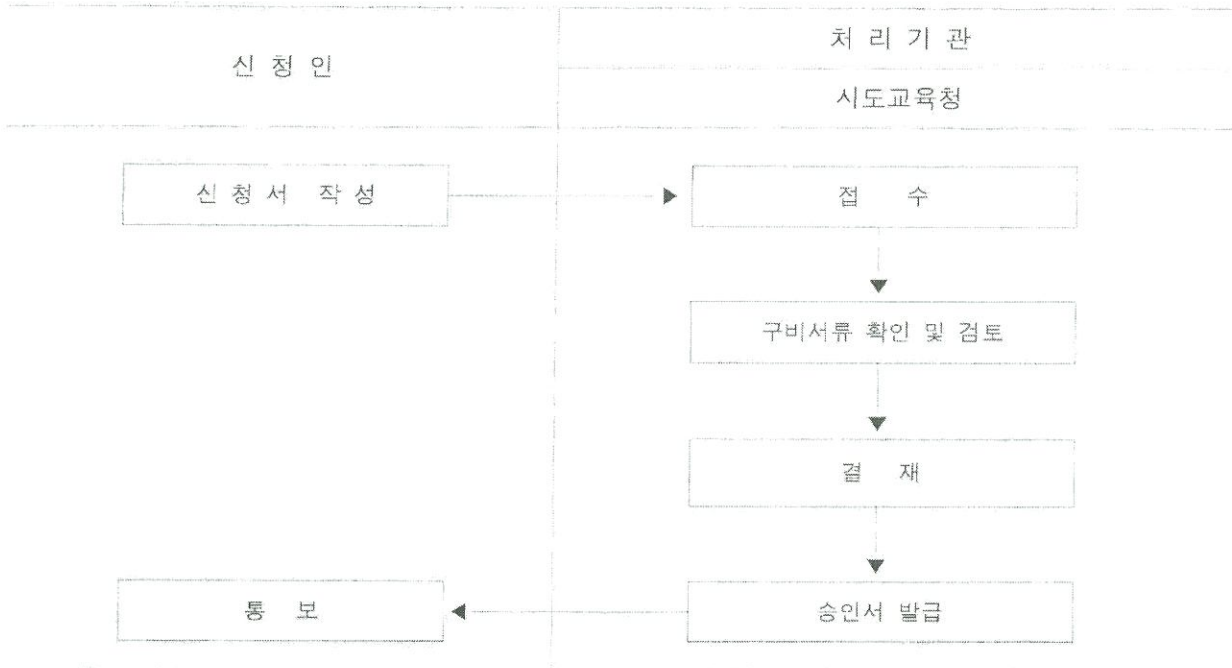
행정인

건축승인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수수료	없 음	처리기간	
근거법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 학교시설의 동별개요(8동)

()면중 면

주용도 교육연구시설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층수	지하()/지상(3)층						
구분	계	1층	2층	3층	층	층	층
바닥면적(m ²)		170.88	156.14	161.94			
용도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구분	층	층	층	층	층	층	층
바닥면적(m ²)							
용도							
구분	층	층	층	층	층	층	층
바닥면적(m ²)							
용도							
직통계단수	개 승용승강기 대수			대 비상용승강기 대수			대

유의사항

※ 작성방법(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는 동마다 따로 작성하십시오)

- ①·②·③란 및 신청인란에는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③ 및 ④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그 면적이 주된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50%미만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가.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 ⑤"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등이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 ⑥"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이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⑦"건폐율"은 건축면적÷대지면적×100(%)로 산정합니다.
- ⑧"용적율"은 연면적(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주차면적은 제외)÷대지면적×100(%)로 산정합니다.
- ⑨"구조"는 목조·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타로 기재하되, 벽체와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건축승인준수사항(부산국제외국어고)

- 다음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 제5항 및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 사용의 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 공사장에는 건축승인 표지판을 인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건축승인서 및 도서를 항상 비치하여야 합니다.
- 2. 증축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소음, 분진등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니 사전에 해당 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 개최등 충분한 양해를 구하여 주민불편의 최소화 및 민원발생시 민원해결후 공사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터파기 공사시 세륜시설 또는 세륜인력을 배치하여 도로의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 3. 공사중에 허가사항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사항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 4. 공사로 인하여 공공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공공시설물의 기능을 해하여서는 안되며 공공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5. 공사시행시 수반되는 사항이나 설비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외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6. 낙하물 방지망은 방호선반이나 방호철망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7. 사업시행전 관련법규(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등) 이행(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 특정공사사전신고등)을 위해 관할행정청과 별도 협의후 신고하여야 함.
- 8.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모든 건설폐기물(폐석면,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벽돌이나 블럭 및 타일등의 폐건축자재, 기타)은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득한후 폐기물의 배출예정일 7일까지 관계기관에 신고(미신고 배출자 : 벌칙)후 허가 받은 폐기물처리회사에 위탁처리토록 조치하고 사용승인 신청시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착공전 공사감리를 계약하여 공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공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공사완료보고서 및 다른법령이나 규정의 이행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0. 거실의 경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제3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조도:300룩스이상, 소음:55데시벨 이하, 온도:섭씨 18도 이상)